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54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5. 28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주거기본법」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신설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,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민 및 비주택 거주민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).
- 나.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8조,

제21조 등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- 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- 3)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
- 사. 「주거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주거복지 지원대상자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「주거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구민의 의견을</u></p>

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

[시행 2022. 4. 20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3호, 2022. 4. 20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거복지”란 주거육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주거복지 지원대상자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
 - 다.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
 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마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청년
 - 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 이라 한다)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거복지사업 계획
3.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

제5조(주거복지사업)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2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
3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
4.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
5.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
6.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·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

다.

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주거복지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제1243호, 2022.4.2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주거기본법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61호, 2021. 12. 7., 일부개정]

제2조(주거권)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.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23.>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
제14조(주거환경의 정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6조(주거약자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

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·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1조(주거복지 전달체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·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4. 3. 25.] [국토교통부령 제1319호, 2024. 3. 25., 일부개정]

제41조(신혼부부 특별공급) 1. 공급요건

가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이하 같다)이 7년 이내일 것

나. 삭제 <2018. 5. 4.>

다.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. 다만,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.